

2023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2023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http://global.at.or.kr/>

** 검색포털에서 "aT수출지원"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쉽게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북 내용은 '23년 1월 기준 내용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북 내용은 농식품수출정보사이트(<http://www.kati.net>)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①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식품수출정보(KATI)	1
2. 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2
3. 수출컨설팅	3
4. 현지화 지원	4
5.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5
② 수출품목육성·발굴	
6. 수출통합조직 육성	6
7.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7
8. 수출상품화 지원	8
9.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10
10. 우수농식품패키지지원	11
③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12
12. 안전성관리	13
13. 선도유지제 지원	14
④ 통관 및 물류지원	
14. 수출물류비 지원	15
15. 항공공동물류활성화	16
16.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17
17. 수출보험지원	18
18. 해외인증 등록지원	21
⑤ 현지 유통망 개척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2
20. Global K-Food Fair	25
21. 바이어 거래알선	26
22.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29
23. 해외판촉행사 지원	30
24. 검역해소품목 지원	31
25. 전략품목육성 지원	32
26.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33
27. 온라인모바일마케팅	34
28. 뉴미디어마케팅	35
⑥ 수출 지원 자금용자	
29.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36
30.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37
<참고>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38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39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식품수출정보(KATI)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등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이용 카테고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서 비 스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뉴스</td> <td>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스토리뉴스, 동영상 등</td> </tr> <tr> <td>품목</td> <td>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td> </tr> <tr> <td>국가</td> <td>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td> </tr> <tr> <td>통관</td> <td>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식품첨가물 등</td> </tr> <tr> <td>자료</td> <td>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등</td> </tr> <tr> <td>통계</td> <td>월별, 국가별, 품목별, 기간별 수출입 통계정보</td> </tr> </tbody> </table>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뉴스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스토리뉴스, 동영상 등	품목	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국가	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통관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식품첨가물 등	자료	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등	통계	월별, 국가별, 품목별, 기간별 수출입 통계정보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뉴스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스토리뉴스, 동영상 등													
	품목	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국가	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통관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식품첨가물 등													
	자료	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등													
	통계	월별, 국가별, 품목별, 기간별 수출입 통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 개별업체 희망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 - 시장분석/경쟁력분석 중 선택하여 맞춤형 해외시장 조사 보고서 무료 제공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수출정보 KAT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및 모바일 : www.kati.net - SNS 채널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8KATI, (카카오 채널) kati ○ 농식품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신청 														
추진현황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농식품 수출정보 실시간 제공 ○ 통관문제사례 DB구축 및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국가별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대상 맞춤정보 지원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TI 홈페이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9) ○ 농식품 수출기업 맞춤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5) 														

2. 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를 매칭하여 거래알선을 추진하고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해주는 온라인 상설 거래알선·홍보 사이트 역할 수행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업체(신선·가공 모두 해당)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의 홍보 채널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바이어 RFQ 요청으로 거래 성립 시, 통역·화상상담 지원 - 해외바이어-수출업체 간 관심 품목 거래선 발굴 및 알선 - 가입 수출업체 개인 미니홈피 공간 제공(약 10G 저장공간 제공) ○ 수출농식품에 대한 아카이브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 수출업체·제품정보 해외바이어 소개용 홍보사이트 역할 수행 - aT 저작권 보유 이미지·영상 등 대국민 정보 공개로 콘텐츠 활용 지원 - 해외박람회, K-Food Fair 등 온라인 박람회 페이지 제공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농식품 수출업체 모두 가능
모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 상시 운영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trade.or.kr) 접속 → 회원가입 → 상품등록 → 바이어 요청 시, 업체·제품 소개 및 알선 ○ 해외바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푸드트레이드(k-foodtrade.or.kr) 접속 → 회원가입 → 관심상품 RFQ·Inquiry 등록 등 수출업체 매칭 요청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1, 0986)



3. 수출컨설팅

개 요	○ 농식품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기수출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내수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구 분	지원분야	지원한도	자부담
	해외진출 컨설팅	▶ 전문 컨설팅사 연계 장기 컨설팅(8개월) ○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해외마케팅 등 7개 항목 ▶ 지원유형 ① 수출초보(전년도 수출실적 5만불 미만) ② 시장개척(전년도 수출실적 5만불 이상)	20백만원 (중소·중견 80%)	20%
	현장코칭	▶ 전문위원(민간 전문가) 연계 단기 컨설팅(최대 7회)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디자인 개발, 법률상담 등	최대 7회	10만원
	물류 효율화	▶ 물류 컨설팅사 연계 물류 효율화 특화 컨설팅(2-8개월) ○ (기본) 물류비 비교 분석, 물류 최적루트 제시 ○ (심화) 물류비 분석/절감 방안 제시, 콜드체인 구축 등	30백만원 (중소 90% 중견 80%)	(기본) 무료 (심화) 중소 10% 중견 20%
	FTA 특혜관세 활용	▶ 관세사 연계 FTA 활용 관세절감 컨설팅(최대 15회) ○ 수출기업 대상 HS CODE 분류, 원산지 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5개 항목 서비스 제공	최대 15회	무료
선정기준	○ 매출액, 수출액 등 평가 후 적합 업체 선정			
추진절차	○ 모집공고(1월) → 업체선정(2월) → 사업추진 및 수시점검(2월-10월) → 사업정산(11월) · 현장코칭, FTA특혜관세, 물류효율화(기본)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접속 → 사업신청			
담당부서	○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8, 0867)			

4.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개요	○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으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 (수출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36개국(전문기관 117개소)																																					
	<table border="1"> <tr> <td>미주·중남미</td> <td>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td> <td>유럽</td> <td>EU,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td> </tr> <tr> <td>동북아</td> <td>중국, 홍콩, 대만, 일본</td> <td>오세아니아</td> <td>호주, 뉴질랜드</td> </tr> <tr> <td>동남아</td> <td>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td> <td></td> <td></td> </tr> <tr> <td>중앙아</td> <td>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td> <td></td> <td></td> </tr> <tr> <td>중 동</td> <td>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튀르키예</td> <td></td> <td></td> </tr> </table>			미주·중남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	EU,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동북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중앙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 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튀르키예																	
	미주·중남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	EU,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동북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 인니, 말련,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중앙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 동	UAE,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란, 튀르키예																																				
	○ 지원방법 :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 <th>주요내용</th> <th>지원대상 (지원단위)</th> <th>지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비관세장벽 현지 자문</td> <td>○ [일반]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업제별 10회 제한) <table border="1"> <tr> <td>분야</td> <td>지 원 (자 문) 내 용</td> </tr> <tr> <td>통관</td> <td>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늠어부, 현지 세종분류 및 관세율</td> </tr> <tr> <td>SPS</td> <td>현지 식용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td> </tr> <tr> <td>법률</td> <td>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현지법인 설립 등 법률자문</td> </tr> <tr> <td>기타</td> <td>현지어 표기방법, 환원인증 관련 자문 등</td> </tr> </table> </td> <td rowspan="2">수출업체 및 바이어 (20백만인)</td> <td rowspan="2">100% (자부담 없음)</td> </tr> <tr> <td>○ [특수] 무역분쟁 및 클레임, 美 FSVP 컨설팅,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td> </tr> <tr> <td rowspan="2">수입등록· 검사</td> <td>○ [수입등록]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US FDA 제조시설 등록 - (바이어) 현지 수입식품 등록비(인도네시아 식약처EFPO, 베트남 식약처VFA 등록 등) ○ [식품검사]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에틸렌옥사이드 식품검사(‘22. EU검역강화) * 변경 가능 - (바이어)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td> <td>수출업체 (30백만인) 바이어 (10백만인)</td> <td rowspan="2">80% (자부담 20%)</td> </tr> <tr> <td>○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기본 제작·등록 지원 - 수출국 통관 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식품검사</td> </tr> <tr> <td>지적재산권</td> <td>○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특허권 출원·갱신비용 지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사전검토(필요시) 후 상표권 출원·갱신 지원 - (특허권) 국내 특허권 취득 업체 대상 특허권 출원 지원</td> <td>수출업체 (30백만인)</td> <td></td> </tr> <tr> <td>포장패키지</td> <td>○ 현지 포장재·용기 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 *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해당제품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td> <td>바이어 (10백만인)</td> <td></td> </tr> <tr> <td>One-Stop 시협수출</td> <td>○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4개국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현지 마케팅 등 사업수출 * 현지로 발송하는 샘플물량 150만인 상당은 왕가업체 자부담(필수)</td> <td>수출업체</td> <td>100%</td> </tr> </tbody> </table>			항목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단위)	지원비율	비관세장벽 현지 자문	○ [일반]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업제별 10회 제한) <table border="1"> <tr> <td>분야</td> <td>지 원 (자 문) 내 용</td> </tr> <tr> <td>통관</td> <td>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늠어부, 현지 세종분류 및 관세율</td> </tr> <tr> <td>SPS</td> <td>현지 식용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td> </tr> <tr> <td>법률</td> <td>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현지법인 설립 등 법률자문</td> </tr> <tr> <td>기타</td> <td>현지어 표기방법, 환원인증 관련 자문 등</td> </tr> </table>	분야	지 원 (자 문) 내 용	통관	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늠어부, 현지 세종분류 및 관세율	SPS	현지 식용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	법률	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현지법인 설립 등 법률자문	기타	현지어 표기방법, 환원인증 관련 자문 등	수출업체 및 바이어 (20백만인)	100% (자부담 없음)	○ [특수] 무역분쟁 및 클레임, 美 FSVP 컨설팅,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수입등록· 검사	○ [수입등록]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US FDA 제조시설 등록 - (바이어) 현지 수입식품 등록비(인도네시아 식약처EFPO, 베트남 식약처VFA 등록 등) ○ [식품검사]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에틸렌옥사이드 식품검사(‘22. EU검역강화) * 변경 가능 - (바이어)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	수출업체 (30백만인) 바이어 (10백만인)	80% (자부담 20%)	○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기본 제작·등록 지원 - 수출국 통관 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식품검사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특허권 출원·갱신비용 지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사전검토(필요시) 후 상표권 출원·갱신 지원 - (특허권) 국내 특허권 취득 업체 대상 특허권 출원 지원	수출업체 (30백만인)		포장패키지	○ 현지 포장재·용기 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 *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해당제품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바이어 (10백만인)		One-Stop 시협수출	○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4개국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현지 마케팅 등 사업수출 * 현지로 발송하는 샘플물량 150만인 상당은 왕가업체 자부담(필수)	수출업체
항목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단위)	지원비율																																			
비관세장벽 현지 자문	○ [일반] 통관, 법률, 관세, SPS, 현지어 표기법 등 자문(업제별 10회 제한) <table border="1"> <tr> <td>분야</td> <td>지 원 (자 문) 내 용</td> </tr> <tr> <td>통관</td> <td>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늠어부, 현지 세종분류 및 관세율</td> </tr> <tr> <td>SPS</td> <td>현지 식용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td> </tr> <tr> <td>법률</td> <td>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현지법인 설립 등 법률자문</td> </tr> <tr> <td>기타</td> <td>현지어 표기방법, 환원인증 관련 자문 등</td> </tr> </table>	분야	지 원 (자 문) 내 용	통관	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늠어부, 현지 세종분류 및 관세율	SPS	현지 식용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	법률	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현지법인 설립 등 법률자문	기타	현지어 표기방법, 환원인증 관련 자문 등	수출업체 및 바이어 (20백만인)	100% (자부담 없음)																									
	분야	지 원 (자 문) 내 용																																				
통관	수출·통관 절차, 통관서류, 통관 가늠어부, 현지 세종분류 및 관세율																																					
SPS	현지 식용위생 검역 및 허가 기준																																					
법률	국제법, 현지 세법 및 식품 관련 법, 현지법인 설립 등 법률자문																																					
기타	현지어 표기방법, 환원인증 관련 자문 등																																					
○ [특수] 무역분쟁 및 클레임, 美 FSVP 컨설팅, 수입경보 해제 컨설팅																																						
수입등록· 검사	○ [수입등록]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중국 해외생산기업·제품 등록, US FDA 제조시설 등록 - (바이어) 현지 수입식품 등록비(인도네시아 식약처EFPO, 베트남 식약처VFA 등록 등) ○ [식품검사]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 (수출업체) 에틸렌옥사이드 식품검사(‘22. EU검역강화) * 변경 가능 - (바이어)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	수출업체 (30백만인) 바이어 (10백만인)	80% (자부담 20%)																																			
	○ 수출대상국 규정에 부합하는 현지어 라벨 기본 제작·등록 지원 - 수출국 통관 가능여부 사전검토 및 라벨 제작 시 필요한 식품검사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특허권 출원·갱신비용 지원 - (상표권) 유사상표 조사 사전검토(필요시) 후 상표권 출원·갱신 지원 - (특허권) 국내 특허권 취득 업체 대상 특허권 출원 지원	수출업체 (30백만인)																																				
포장패키지	○ 현지 포장재·용기 디자인 시안 비용 지원 *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인한 해당제품 수출입 실적 확인 시에만 지원 가능	바이어 (10백만인)																																				
One-Stop 시협수출	○ 중국, 일본, 베트남, 인니 4개국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현지 마케팅 등 사업수출 * 현지로 발송하는 샘플물량 150만인 상당은 왕가업체 자부담(필수)	수출업체	100%																																			
* 현지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실증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용방법	○ 지원기간 : 1-11월(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모집공고 : aT 홈페이지(at.or.kr), KATI(kati.ne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현지화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담당부서	○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1, 0872, 0878)																																					



5.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개 요	○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한 농식품 특화 무역실무 교육 기회 제공으로 농식품 분야 수출 전문가 육성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관련 종사자, 수출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지자체 수출 담당 공무원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교육명	①농식품 수출마스터 교육	②수출통합조직·협의회 운영 역량강화	③농식품 수출 지원역량 강화	
	교육기간	3월 ~ 11월 중 1회	3월 ~ 6월 중 1회	3월 ~ 11월 중 1~2회	
	교육대상	농식품 수출 관련 종사자 수출에 관심있는 농식품 업체 임직원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및 수출협의회 사무국, CEO, 회원사 등	지자체 수출담당 공무원	
	교육내용	무역 실무	서식·규범, 포장, 무역절차 및 검역·통관·인증, 라벨링 등	- 통합조직 및 수출협의회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예정 - 교육분야 : 수출농산물 품질관리, 수출물류, 예결산, 계약교육 등 - 자세한 교육내용은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립 예정	- 농식품 수출진흥 정책 - 농식품 통관제도 및 사례, 해외 인증제도, 비관세장벽 이슈 등 - 수출절차, 무역계약 실무, 대금결제, 국제협상 등 - aT수출지원사업 소개 - 코로나 이후 농식품 수출 트렌드 및 온라인 수출 마케팅 사례 소개 등 - 자세한 교육내용은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립 예정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략 (온·오프라인), 주요 수출시장 진출전략 등		
		해외 연수	국제식품박람회 참관, 현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토론 수업	현장 문제점 토의 등		
	교육형태	합숙 / 비합숙 병행	1박 2일 개별숙박(오프라인)	비합숙(온/오프라인)	
	교육방법	교육생 모집 후 정기적 교육 진행	교육생 모집 후 단기 교육 진행(1회)	교육생 모집 후 단기 교육 진행(1~2회)	
교육인원	25명 내외	35명 내외	25명 내외		
지원비율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국고보조 100%	국고보조 100%		
이용방법	○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접속 → 회원가입 → 해당 교육과정 신청 ○ 수출통합조직 운영 역량강화 과정은 별도모집				
담당부서	○ 농임산수출부(061-931-0821) 농식품유통교육원(수출마스터 : 031-400-3567, 수출마스터외 : 031-400-3525)				

2 수출품목육성·발굴

6. 수출통합조직 육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수출통합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 수출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한 수출통합조직 -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지원을 통해 수출협의회 및 선도조직 등의 수출통합조직화 지속 유도 																																	
신청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육성사업비(20% 자부담) : 배정액 × 평가백분율(득점율)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수출통합조직</th> </tr> <tr> <th rowspan="2">품목조직별 수출규모</th> <th colspan="4">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th> </tr> <tr> <th>45%이하</th> <th>46%~70%미만</th> <th>70%이상~80%미만</th> <th>80%이상~90%미만</th> <th>9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3천만불초과</td> <td>250</td> <td>500</td> <td>700</td> <td>1,000</td> <td></td> </tr> <tr> <td>1천만불초과</td> <td>125</td> <td>300</td> <td>400</td> <td>625</td> <td></td> </tr> <tr> <td>1천만불이하</td> <td>100</td> <td>150</td> <td>250</td> <td>40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수출통합조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45%이하	46%~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	3천만불초과	250	500	700	1,000		1천만불초과	125	300	400	625		1천만불이하	100	150	250	400	
	구분	수출통합조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45%이하	46%~70%미만	70%이상~80%미만	80%이상~90%미만	90%이상~																												
3천만불초과	250	500	700	1,000																														
1천만불초과	125	300	400	625																														
1천만불이하	100	150	250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최근 2개년 평균수출량(kg) × 기준단가(원/kg) × 90%] - [최근 2개년 평균수출액(US\$) × 적용계수(%) × 10%] - 기준단가 : 품목·국가별 평균 표준물류비를 감안한 적정단가로 평가등급별(일반~최우수)로 단가를 차등하여 적용 - 적용계수 : 품목·국가별 평균수출액을 감안한 조정계수로 평가등급별(일반~최우수) 차등 적용 ○ 수출안정화인센티브 : 총 3개년 동안 450백만원 지원하되 교차 가능 																																		
진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 :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23년 수출통합조직 운영지침」 참고 ○ 신청방법 및 모집시기 : 별도공고 * aT 홈페이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KATI에서 조회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임산수출부(061-931-0821, 0844) 																																	



7. 수출선도조직 육성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선도조직(개별, 연합) 																																	
신청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 배정액 × 평가백분율(득점율)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수출선도조직</th> </tr> <tr> <th colspan="4">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th> </tr> <tr> <th>~2%(67%)미만</th> <th>2%이상~7%미만</th> <th>7%이상~9%미만</th> <th>9%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품목조직별 수출규모</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천만불초과</td> <td>70</td> <td>90</td> <td>150</td> <td>200</td> </tr> <tr> <td>1천만불초과</td> <td>60</td> <td>80</td> <td>100</td> <td>120</td> </tr> <tr> <td>1천만불이하</td> <td>40</td> <td>60</td> <td>80</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2%(67%)미만	2%이상~7%미만	7%이상~9%미만	9%이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3천만불초과	70	90	150	200	1천만불초과	60	80	100	120	1천만불이하	40	60	80	100
	구분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2%(67%)미만	2%이상~7%미만	7%이상~9%미만	9%이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3천만불초과	70	90	150	200																														
1천만불초과	60	80	100	120																														
1천만불이하	40	60	8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최근 2개년 평균수출량(kg)×기준단가(원/kg)×90%]+[최근 2개년 평균수출액(US\$)×적용계수(%)×10%] 기준단가 : 품목-국가별 평균 표준물류비를 감안한 적정단가로 평가등급별(일반~최우수)로 단가를 차등하여 적용 적용계수 : 품목-국가별 평균수출액을 감안한 조정계수로 평가등급별(일반~최우수) 차등 적용 																																		
진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차 :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23년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 참고 신청방법 및 모집시기 : 별도공고 * aT 홈페이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KATI에서 조회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수출부(061-931-0821, 0844) 																																	

8. 수출상품화 지원

① 상품화 지원

개 요	○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대상	○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 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개발·개선 및 샘플배송비 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 	-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60백만원 	※ 2022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혜업체만 지원가능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 수산물·수산가공식품 및 기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통합조직 품목 기준) 미가입업체는 지원제외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절차 : 계량평가(3배수) → 사업계획평가(2배수) → 상품성·수출업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평가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7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평가 대상업체 선정 ○ 사업계획평가(70점) : 사업신청서 내 상품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20점) : 해외지사 평가 ○ 공개발표평가(비계량, 8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 		
진행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모집공고 (1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업체선정 (2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 약정체결 (3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추진 및 점검·정산 (연중)</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최종정산 및 평가 (12월)</div> </div>		
모집시기	○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 수출업체 종합지원 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 신청		
문의처	○ 식품수출부(061-931-0748,0745)		



②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개요	○ UN 및 해외 조달시장 내 식품 및 연관 산업류 진출 지원으로 수출 활로 확대
지원대상	○ 식품 및 종자 등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제조업체 및 판권협회,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수출업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조달시장의 기존 주력 품목을 한국의 가공 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개발, 기존 주력 품목을 대체할 목표로 개발 가능한 품목 * 예시 : 영양강화쌀, 슈퍼시리얼 등 개발 가능한 품목 - 수출을 하고 있거나 내수 상품으로 성분이나 기능 변경 없이 국제 조달 시장으로 바로 진출이 가능한 품목 * 예시 : 설탕, 채소종자, 유제품 등 국제 공공조달기구 조달기준 및 규격에 맞는 품목 ○ 지원한도 : 60백만원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및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 요구하는 식품 규격에 맞는 제품의 진출 지원 (UNGM · WFP Roster 등록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 - 국내 기업의 GAIN 시설인증 취득 지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 현장 실사(필요시) - 계량평가(50) : 매출액, 수출실적, 인증취득여부 등 - 비계량평가(50) : 사업목표, 제품적합성, 국제조달 가능성 등 * 평가점수 및 항목은 지원구분에 따라 변경가능
진행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업체신청 (2월)</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업체 선정 (3월)</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 약정체결 (3월)</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추진 및 점검(연중)</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산 및 평가 (12월)</div> </div>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3년 한국농식품 및 연관산업류 UN조달시장 진출사업” 지원 신청
문의처	○ 식품수출부(061-931-0748)

9.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우수한 농식품 기업들의 수출 브랜드 육성 및 해외 인지도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에 입점된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정부인증 및 해외인증 보유,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장조사 및 컨설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업체별 목표국가-품목 관련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전략수립) 수출브랜드 진단 및 핵심 마케팅 전략 실행방안 수립 </td> </tr> <tr> <td>홍보마케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배너광고, SNS 홍보 등 옥외매체 광고, TV광고, 신문/잡지광고, 입간판 제작 등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내용	시장조사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업체별 목표국가-품목 관련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전략수립) 수출브랜드 진단 및 핵심 마케팅 전략 실행방안 수립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배너광고, SNS 홍보 등 옥외매체 광고, TV광고, 신문/잡지광고, 입간판 제작 등
	구분	지원 내용					
시장조사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사) 업체별 목표국가-품목 관련 해외 시장조사 지원 ○ (전략수립) 수출브랜드 진단 및 핵심 마케팅 전략 실행방안 수립 						
홍보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배너광고, SNS 홍보 등 옥외매체 광고, TV광고, 신문/잡지광고, 입간판 제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 1~2년차 최대 120백만원, 3년차 최대 100백만원 ○ 지원비율 :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 80%, 중견 70% 차등 지원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법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사업자 선정 - 계량 평가(40점) : 수출경쟁력, 재무건전성, 제품역량 등 서류평가 - 비계량 평가(60점) : 사업이해도, 조직력 및 시장개척도, 브랜드경쟁력 등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계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대상 1.5배수 내·외에 한정 비계량평가(발표) 실시 						
진행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모집공고 (1월)</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월)</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중간점검 (7월)</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추진 (~11월)</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산 및 평가 (12월)</div> </div>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접속 → 사업신청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2, 0863) 						



10.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농식품(신선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실적 또는 국내 매출 보유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만 수출하는 업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제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사업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 · 사용(15개 사업메뉴)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사업메뉴</th> </tr> </thead> <tbody> <tr> <td>1. 수출컨설팅*</td> <td>6. 해외인증등록*</td> <td>11. 개별바이어 초청</td> </tr> <tr> <td>2. 수출전문인력 양성</td> <td>7. 샘플통관운송</td> <td>12. 유통업체 판촉</td> </tr> <tr> <td>3. 제품개발(기술도입)</td> <td>8. 홍보콘텐츠 제작*</td> <td>13. 온라인 판촉</td> </tr> <tr> <td>4. 포장디자인 개발*</td> <td>9. 현지시장조사</td> <td>14. 미디어 홍보*</td> </tr> <tr> <td>5. 지적재산권 출원</td> <td>10. 국제식품박람회 참가</td> <td>15. 소비자 체험홍보</td> </tr> </tbody> </table> <p>* 특정 1개 사업메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포장디자인 개발, 홍보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홍보는 국고지원 한도 30백만원 * 수출컨설팅, 해외인증등록은 aT 해당사업에서 정한 컨설팅 POOL 활용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 제외</p>	사업메뉴			1. 수출컨설팅*	6. 해외인증등록*	11. 개별바이어 초청	2. 수출전문인력 양성	7. 샘플통관운송	12. 유통업체 판촉	3. 제품개발(기술도입)	8. 홍보콘텐츠 제작*	13. 온라인 판촉	4. 포장디자인 개발*	9. 현지시장조사	14. 미디어 홍보*	5. 지적재산권 출원	10.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5. 소비자 체험홍보				
사업메뉴																							
1. 수출컨설팅*	6. 해외인증등록*	11. 개별바이어 초청																					
2. 수출전문인력 양성	7. 샘플통관운송	12. 유통업체 판촉																					
3. 제품개발(기술도입)	8. 홍보콘텐츠 제작*	13. 온라인 판촉																					
4. 포장디자인 개발*	9. 현지시장조사	14. 미디어 홍보*																					
5. 지적재산권 출원	10.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5. 소비자 체험홍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 지원비용 :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원유형</th> <th>지원대상</th> <th>배정한도(국고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기본</td> <td>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만불 미만이면서 국내 매출 5억원 이상</td> <td>60백만원/개소</td> </tr> <tr> <td rowspan="2">심화</td> <td>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만~500만불 미만</td> <td>100백만원/개소</td> </tr> <tr> <td>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td> <td>140백만원/개소</td> </tr> </tbody> </table> <p>* 추진과정에서 지원규모, 배정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기준구간에 따라 지원유형이 결정됨 - 수출실적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Trade) 통계자료 기준으로 인정</p>	지원유형	지원대상	배정한도(국고 기준)	기본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만불 미만이면서 국내 매출 5억원 이상	60백만원/개소	심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만~500만불 미만	100백만원/개소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140백만원/개소											
지원유형	지원대상	배정한도(국고 기준)																					
기본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만불 미만이면서 국내 매출 5억원 이상	60백만원/개소																					
심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만~500만불 미만	100백만원/개소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140백만원/개소																					
추진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모집 공고</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서적 평가</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협약 체결</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사업 추진</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시 및 추가 점검</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성과 점검</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월</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2월</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3월</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0월</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매월 2-3분기</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11~12월</td> </tr> </table>	모집 공고	→	서적 평가	→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	수시 및 추가 점검	→	성과 점검	1월		2월		3월		~10월		매월 2-3분기		11~12월
모집 공고	→	서적 평가	→	협약 체결	→	사업 추진	→	수시 및 추가 점검	→	성과 점검													
1월		2월		3월		~10월		매월 2-3분기		11~12월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공고 → 1차 서류 평가 → 2차 비계량 평가 → 최종 선정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접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2, 0863, 0864, 0865)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개요	○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 정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			
신청요건	○ 농집 코디네이터(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지정 * 정보화우수단지 및 수출전문단지 우대 ○ 농집 내 생산·수출계획 및 생산 수출량(실적) 입력 필수 ○ 의무자금금 구성 품목으로 지정받은 단지는 의무거출금 납부 시에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시기 : 약정체결일~ 2023.11.30			
	○ 농가 인식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품질관리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 (지원한도: 단지당 12백만원(참여농가 10인 이하), 초과 1인당 50만원 추가 / 최대 32백만원)			
	부분	세부지원내역		
	농가 인식개선	-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검역 등) -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조사, 워크숍 등 - 안전성 전담관리자(개인)의 워크숍 참여 비용 -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농가 정보화	- 단지 농가 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 제고 교육 등		
	전문기술 교육	- 단지 대표품목의 신기술, 신품종 도입 관련 생산현장 컨설팅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 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 신품종 도입 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종묘구입(판매 목적 불가)		
	품질관리 (농가) 사례전파	- 단지 내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농가 점검·지도 등) - 단지 내 우수 영농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담당부서	○ 수출기반부(061-931-0831, 0835)			
	○ 지역본부 연락처			
	지사	연락처	지사	연락처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40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5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충북지역본부	043-902-9526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6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7	경남지역본부	055-608-5834	
전북지역본부	063-904-5874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12. 안전성관리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잔류농약·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시기 : 2023.1.1. ~ 2023.12.31. 검사성적분(통지일 기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미감(ex: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단, 10.1~12.20 검사분은 12.21까지 신청가능하며, 12.21~12.31 검사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품목 : 수산물 제외 가공식품 전반 지원내용 :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협약의 및 현장 실사 등 행정 사항 지원 지원시기 : 연중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운영계획 수립 (본사)</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공고 (본사, 연초)</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 (atess.at.or.kr)</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서류 검토 (지역본부)</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검사비 지원 (지역본부)</div> </div>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신청서류 제출 (수출업체)</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서류 접수 및 검토 (aT)</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심사 및 등록 (일본 후생노동성)</div> </div>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잔류농약,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반부(061-931-0834) 각 관할지역본부(p.14 지역본부 연락처 참고) 대일수출 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수출부(061-931-0745)

13. 선도유지제 지원

개요	○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시기 : 2023.1.1. ~ 2023.12.31. 선적사용분 지원					
	* 매 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10.1~12.20 선적사용분은 12.21까지 신청가능하며, 12.21~12.31 선적사용분은 익년 1.5까지 신청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수출용 저장포도(샤인머스켓)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딸기, 파프리카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홍보센터>공고>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세부사용내역서, 구입증빙(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등					
담당부서	○ 수출기반부(061-931-0834, 0836)					
	○ 지역본부 담당자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40(검사비) 031-8060-6013(선도유지)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5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211-9523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608-5831
	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89-5017	제주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4			



4 통관 및 물류지원

14. 수출물류비 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US10만불 이상인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지원제외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홍콩수출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 〈대일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업체에 한해 지원 지자체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설정 					
지원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지원부류 :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1.1.-12.31. 수출 선적분 				
	지원내용 및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물류비의 15%를 한도로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5% 이내/수출업체)와 지자체(10% 이내/수출업체+농가분)가 분담하여 지원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식품은 주원료의 국내 비중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5% 지원 수출통합조직 미가입 시 0%,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1% 지원 수출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수출협의회 품목 : 사과, 채소종자, 배추(양배추), 양란, 김치, 인삼, 막걸리, 전통주, 유자차, 장류, 쌀, 닭고기, 유제품 수출건별 지원액은 수출액(FOB)의 10%까지 지원(항공수출은 30%)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지원업체 사전등록</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신청접수 (상시신청)</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지원신청서 검토</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월 2회)</div> </div>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반부(061-931-0832, 0837, 0839) 지역본부 담당자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13 031-8060-6040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5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74 051-947-1083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31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608-5833
	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89-5019	제주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064-900-8658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4				

15. 항공공동물류 활성화사업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 원거리 항공 활성화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물류비 절감 도모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화주)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와 항공(운송)사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 수출통합조직 결성품목(파프리카, 딸기, 버섯, 포도, 절화류, 배, 토마토, 귤)은 통합조직 미가입 업체 지원제외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천만원 * 수산·임산물 및 대기업(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제외 * 예산 조기 소진시 시스템 우선 신청분 순으로 정산
진행절차	<pre> graph LR A[추진계획 수립(aT)] --> B[사업안내 및 모집공고] B --> C[사업신청 및 이용실적 증빙제출 (매월)] C --> D[aT 유류할증료 정산(매월) 및 사업결과 보고] </pre>
추진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노선 : ('22) 9개 항공사 54노선 * '23년도 운영노선은 추후 항공사와 협의 후 확정 예정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가 서류 제출(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참가신청서 등) 및 신청 진행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반부(061-931-0832, 0837, 0839)



16. 해외공동물류센터 · 콜드체인 지원사업

개 요	○ 수출 농식품 해외물류(보관, 저온운송, 풀필먼트 등) 지원을 통한 품질·가격경쟁력 제고 및 신규유통망 개척 지원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현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50-9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별 10-80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 원 대 상</th> <th>지 원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해외공동물류센터 (보관)</td> <td>냉동·냉장창고</td> <td>(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풀필먼트) 이용료의 50%</td> </tr> <tr> <td>상온창고 (청다오물류센터 등)</td> <td>이용료의 50%</td> </tr> <tr> <td>도료 복합물류센터</td> <td>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td> </tr> <tr> <td>콜드체인 (저온운송)</td> <td>저온 운송비용 (입항지 → 최종소비지)</td> <td>이용료의 80%</td> </tr> <tr> <td>온라인 풀필먼트 (신유통물류)</td> <td>온라인물 주문품의 풀필먼트비용</td> <td>이용료의 50%</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해외공동물류센터 (보관)	냉동·냉장창고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풀필먼트) 이용료의 50%	상온창고 (청다오물류센터 등)	이용료의 50%	도료 복합물류센터	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	콜드체인 (저온운송)	저온 운송비용 (입항지 → 최종소비지)	이용료의 80%	온라인 풀필먼트 (신유통물류)	온라인물 주문품의 풀필먼트비용	이용료의 50%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해외공동물류센터 (보관)	냉동·냉장창고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풀필먼트) 이용료의 50%															
상온창고 (청다오물류센터 등)		이용료의 50%																
도료 복합물류센터		임차료·창고이용료의 60-80%																
콜드체인 (저온운송)	저온 운송비용 (입항지 → 최종소비지)	이용료의 80%																
온라인 풀필먼트 (신유통물류)	온라인물 주문품의 풀필먼트비용	이용료의 50%																
선정기준	○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table border="1"> <thead> <tr> <th>이용업체 선정</th> <th>지원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각 관할 해외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td> <td>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td> </tr> </tbody> </table>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각 관할 해외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각 관할 해외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진행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평가 (1-2월 중)</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약정체결 (2월)</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분기별 이용실적 정산 (3-12월)</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과보고 (12월)</div> </div>																	
이용방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출업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② 선적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aT해외지사 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⑤ 운송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유통업체</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④ 물품보관 지시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바이어</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위탁 물류업체 (공동물류센터, 콜드체인 운송사)</div>																	
추진현황	○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정현황 : ('22.12) 18개국 85개소 ○ 콜드체인 운영 지원 국가 : ('22.12) 4개국 운영(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신청방법	○ 참가신청 : 각 관할 해외지사 ○ 모집시기 : 분기별 추진 *지사별 사정에 따라 시기 변동 가능																	
담당부서	○ 신시장개척부(061-931-0961, 0963)																	

17. 수출보험지원

개 요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 농축산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무역협회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항목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일반형, 범위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선적 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가입보험료의 95%	가입보험료의 90% * 단,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100%
	지원한도	업체당 1억원 한도	
	○ 추가지원 : 엔저현상 지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對일본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23년 상반기(1-6월)에 한정하여 지원비율 100% 적용 (환변동보험 5%, 단기수출보험 10% 추가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한도는 예산소진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 ○ aT는 분기별 또는 무역보험공사 요청 시 사업비 선급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자부담분(가입보험료5~10%)에 한하여 납부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은 aT 홈페이지(http://global.at.or.kr)를 통해서 상시 모집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 : 1588-3884 ○ 농림수산수출부(061-931-0849)		



<참고1>

【 환변동보험 종류 】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환율 하락 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보험금) 지급하고,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환차의(환수금) 납부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나,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부담 - 통화 : USD, JPY, EUR, CNY - 조기결제 가능
	일정 범위까지는 환위험에 노출되나 일정환율 이하로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시 환수금 납부 * 보상시작환율 : 보장환율-10/-20/-30 * 환수시작환율 : 보장환율 +a	○ 보험료 일반선물환과 동일한 수준이나 일정범위 환위험 노출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환율하락에 따른 보험금과 환율상승 시의 환수금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 환율하락 시 100% 헤지가 불가능하나, 환율 상승 시 손실이 제한되는 장점이 있음
옵션형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 (최대 외화당 20-80원 한도 범위 내),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환율 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 (전액 보상),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환율 상승 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 환변동보험 지원비율은 모두 가입보험료의 95%로 동일
-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 요망

<참고2>

■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

■ 상품개요

- 구 성 : 기본계약과 선택계약
- 계약기간 : 1년
- 가입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자
- 보상금액 :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사항

■ 상품별 설명

구 분	기본계약	선 택 계 약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비용 위험
책임금액	1억원 ~ 3억원 (1백만원 단위)	1백만원 ~ 1천만원 (1백만원 단위)	1천만원 ~ 5천만원 (1백만원 단위)
보상비율	100%	100%	50-100%
수출품목	농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보험료	책임금액 × 보험요율(연1회 선납)		
보상절차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보상		

*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

구 분	내 용
대상업체	- 농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수출업체 제외) - '22년도(또는 최근1년간) 수출실적이 USD30백만 이하 - 수출자가 공사등급 R급 업체 또는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제외
책임금액	- USD5만(중소기업 보상비율 95% / 중견기업 보상비율 90% 이내)
보험기간	-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보험증권에 명시)



18. 해외인증등록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 확대에 필요한 해외인증등록·취득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한식연, 지자체, 중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중복지원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 상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할랄(JAKIM, MUI,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셔 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범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종정산확정금액)의 70%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td> </tr> </tbody> </table>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종정산확정금액)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종정산확정금액)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신청서 제출 (상·하반기)</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선정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단계별 진행사항 시스템 내 입력</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인증 취득 후 정산신청</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산검토 후 최종 정산</div> </div> <p>* 사업기간 : 상반기('23.1~5월) / 하반기('23.6~10월)</p>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는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 aT 관할지역본부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 증빙서류 제출 aT지역본부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본사 보고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2, 0864) 						

5 현지 유통망 개척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지원

개 요	○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해외 식품 전문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한국관 내 1부스 제공 * 체재비 등 직접 지원 없음	
	구 분	지원내용
	지원비율	○ (중소·중견기업) 박람회 참가 1회당 자부담 50만원 사전 납부
	지원 항목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장차비, 비품임차비, 온라인 등록·홍보비 등 박람회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 홍보포스터 등 ○ 전시품 운송통관비 *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 체재비는 지원 제외
기 타	○ 운송통관비/냉장(냉동) 비품임차비(24시간 전기료 지원 포함) - 신선농산물(350만원/1회 참가시), 가공식품(150만원/1회 참가시) ○ 사후 운송통관비(100만원/ 1개업체 당)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모집공고 및 접수</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박람회 참가</div> </div>	
추진현황 및 계획	○ 연 2회 ○ '23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2분기), '24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4분기)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국제식품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담당부서	○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1, 0983, 0985)	



<참고> '23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1	GULFOOD 2023	UAE/두바이	2.20-24
2	FOODEX JAPAN	일본/도쿄	3.7-10
3	NPEW	미국/캘리포니아	3.9-11
4	IFE	영국/런던	3.20-22
5	FHA	싱가포르	4.25-28
6	SIAL CANADA	캐나다/토론토	5.9-11
7	APAS SHOW	브라질/상파울루	5.15-18
8	SIAL SHANGHAI	중국/상하이	5.18-20
9	THAIFEX	태국/방콕	5.23-27
10	Food Taipei	대만/타이베이	6.14-17
11	Summer Fancy Food Show	미국/뉴욕	6.25-27
12	MIFB	말레이/쿠알라룸푸르	7.12-14
13	FHI	인니/자카르타	7.25-28
14	Vietfood & Beverage	베트남/호치민	8.10-12
15	HKTDC	중국/홍콩	8.17-19
16	Asia Fruit Logistica	중국/홍콩	9.6-8
17	ANUFOOD India	인도/뭄바이	9.7-9
18	FFA	호주/시드니	9.11-14
19	WorldFood Moscow	러시아/모스크바	9.19-22
20	ANUGA	독일/퀵른	10.7-11
21	FEQ	카자흐/알마티	11.1-3
22	CIIE	중국/상하이	11.6-10
23	SIAL JAKARTA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1.8-11
24	Vietfood & Beverage	베트남/하노이	11.9-12

* 위 참가계획은 '23.1월 기준이며 주최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②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개 요	○ 공사가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에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지 원 내 역</th> </tr> </thead> <tbody> <tr> <td>지원한도</td> <td>○ 최대 600만원/1회 (지원비율 90%)</td> </tr> <tr> <td>지원기간</td> <td>○ '22.12.19. ~ '23.11.30. 중 추진된 박람회</td> </tr> <tr> <td>지원항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온라인등록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 전시물품 운송·통관비 • 보험료(안전, 상해 등)/ 2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부스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 상해 등의 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은 해당X •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는 미지원 </td> </tr> </tbody> </table>	구 분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 최대 600만원/1회 (지원비율 90%)	지원기간	○ '22.12.19. ~ '23.11.30. 중 추진된 박람회	지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온라인등록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 전시물품 운송·통관비 • 보험료(안전, 상해 등)/ 2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부스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 상해 등의 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은 해당X •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는 미지원
	구 분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 최대 600만원/1회 (지원비율 90%)							
지원기간	○ '22.12.19. ~ '23.11.30. 중 추진된 박람회								
지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온라인등록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 전시물품 운송·통관비 • 보험료(안전, 상해 등)/ 2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주최 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부스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 상해 등의 보험에 한하며 여행자보험은 해당X •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25천엔 이내, 유럽 €220 이내, 기타 지역 US\$200 이내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등 체재비는 미지원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모집공고 및 접수</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박람회참가 (연중)</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참가지원 (30일 이내)</div> </div>								
모집시기	○ 현황 : 연간 120회 수준 ○ '23년 참가업체 모집(4분기)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국제식품박람회 →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기업 경쟁력(인증서, 품목의 시장 적합도, 참가업체 수출역량 등)								
담당부서	○ 신유통체널사업부(061-931-0981, 0983, 0985)								



20. Global K-Food Fair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주요 수출 거점도시 내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행사를 접목한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네트워크 조성 및 현지 소비저변 확대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가공수산물 가능, 순수수산물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2B 수출상담회 참여지원 - (사전) ①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지원 - (현장) ① 출장항공비 또는 샘플 운송통관비 ② B2C 연계 마케팅테스트 - (사후) ① 인플루언서 연계 SNS 마케팅 ② 현장계약·MOU 바이어 초청 <p style="text-align: center;">< 2023년 개최지역 및 시기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인니 (자카르타)</th> <th>프랑스 (파리)</th> <th>미국 (뉴욕/LA)</th> <th>중국 (상하이/ 항저우)</th> <th>일본 (도쿄)</th> <th>베트남 (하노이)</th> <th>태국 (방콕)</th> </tr> </thead> <tbody> <tr> <td>행사성격</td> <td>B2B/B2C</td> <td>B2B/B2C</td> <td>B2B/B2C</td> <td>B2B/B2C</td> <td>B2B/B2C</td> <td>B2B/B2C</td> <td>B2B/B2C</td> </tr> <tr> <td>행사시기</td> <td>6월</td> <td>6-7월</td> <td>8-9월</td> <td>9월</td> <td>9월</td> <td>10월</td> <td>10~11월</td> </tr> <tr> <td>참가업체</td> <td>30</td> <td>27</td> <td>40</td> <td>40</td> <td>40</td> <td>30</td> <td>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지역, 시기, 선정규모 등은 향후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인니 (자카르타)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LA)	중국 (상하이/ 항저우)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행사성격	B2B/B2C	B2B/B2C	B2B/B2C	B2B/B2C	B2B/B2C	B2B/B2C	B2B/B2C	행사시기	6월	6-7월	8-9월	9월	9월	10월	10~11월	참가업체	30	27	40	40	40	30	30
구분	인니 (자카르타)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LA)	중국 (상하이/ 항저우)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행사성격	B2B/B2C	B2B/B2C	B2B/B2C	B2B/B2C	B2B/B2C	B2B/B2C	B2B/B2C																										
행사시기	6월	6-7월	8-9월	9월	9월	10월	10~11월																										
참가업체	30	27	40	40	40	30	30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참가업체 모집 (2월)</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참가업체 선정 (3월)</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수출상담회 참여 (6-11월)</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후성과 입력 (~12월)</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일정은 향후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규모 : 237개사 ○ 평가항목 - (계량) 수출역량(수출액, 수출상품 포장표기, 인증서 등) - (비계량) 품목적정성 및 시장개척 가능성 * 가점 : 사회적 경제기업, 농식품 상생기업 등 ** 선정 제외: 수출통합조직(2년차) 미가입업체, 성과관리시스템에 사후실적 미 입력시 차년도 참가제한 																																
모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내 온라인 신청 - 상단메뉴 [K-Food Fair 신청/관리] 접속 → 로그인 → 모집공고 신청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지원부(061-931-0975, 0976) 																																

21. 바이어 거래알선

① 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aT지사 추천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출상담 시 수출업체 개별 사무실에서 1:1 상담 진행 ○ (바이어)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상담부스, 통역비 등
지원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LR A[모집공고] --> B[국내업체 희망 바이어 매칭 신청] B --> C[상담주선] C --> D[상담회 개최] </pre> </div> <p>※ '상담주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p>
모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시기 : 상반기('23.2~3월 예정), 하반기('23.8월 예정)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바이어초청이 불가할 경우, 온라인 상담으로 대체될 수 있음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담메뉴 [사업신청]-[모집공고/신청] → 2023 K-Food 바이어 수출상담회(EKF) 참가업체 모집공고 →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2, 0984, 0987)



②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 도모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산물 수출업체, 국내 법인의 해외 자회사·지사 초청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당 1명의 바이어 초청비(항공료 및 숙박비)의 80% 지원(25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실비 ※ 탑승월 대한항공 홈페이지 고시 국제선 왕복 직항 운임(일반석) 기준 - 숙박비 : 100만원 이내 실비(최대 5박, 1박 20만원 한도) 														
추진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none;">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원 신청</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지원업체 선정</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정산요청</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바이어초청비 지원</td> </tr> <tr> <td style="border: none;">수출업체</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aT</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수출업체</td>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aT</td> </tr> </table>	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원 신청	▶	지원업체 선정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정산요청	▶	바이어초청비 지원	수출업체		aT		수출업체		aT
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원 신청	▶	지원업체 선정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정산요청	▶	바이어초청비 지원									
수출업체		aT		수출업체		aT									
모집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시기 : 2023년 1월(예정) 모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체) 1개사 1회 신청 가능 ※ 수출업체 초청바이어가 중복될 경우 초청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것을 우선 선정 - (정산 신청기한) 바이어 입국일 기준 4주 이내 결과보고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사업신청]-[모집공고/신청] → 2023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모집공고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2, 0987) 														

③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와 해외 유망바이어 간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수출상담을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 ※ 수산물 수출업체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및 바이어 섭외·1:1 상담 매칭, 상담용 샘플배송비 및 통역원, 상담장 이용 등 온라인 수출상담 종합지원 -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일정 : '23년 7월(예정)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모집공고 및 참가신청</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업체 선정 및 바이어 수요조사</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1 상담 매칭</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상담회 개최</div> </div>
모집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시기 : 23년 5월(예정) - 상담회 테마에 따른 업체 모집 및 바이어 매칭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의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사업신청]-[모집공고/신청] → 2023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신청] ※ 사업추진 과정에서 신청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유통채널사업부(061-931-0982, 0984, 0987)



22.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식품 취급 수입업체 및 해외 벤더 또는 국내 수출업체 ○ 해당국에 대한 전년도 한국 농식품 수출입액 5만불 이상 또는 유통판매액 2만불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공시 대상기업'의 대기업 현지법인은 수입업체로 참여 가능 ○ 지원사항 : 입차·장차비, 홍보비, 시음·시식, 마케팅 등 운영 비용의 70~90% - 종합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한도액

구 분	권 역	연간 운영기간	운영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내용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40	100	
		9개월 이상	250	180	110	
	안테나숍 (일반/KFZ)	중동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60	110	80
			9개월 이상	200	140	100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남미	3개월 이상	100	-	-
			6개월 이상	130	90	70
			9개월 이상	160	110	80

- * 팝업스토어는 안테나숍 3개월 이상 기준 적용
- * KFZ의 경우 복수 매장 운영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

지원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세부실행계획수립(GT) • 농식품부 승인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운영주체 선정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업무위탁 및 준비 • 약정 체결(본사, 해외) • 안테나숍 오픈 준비 등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20%;"> 안테나숍 운영 • 운영 · 정산 • 사후관리(성과) </div> </div>
------	--

모집시기	○ 매년 초 모집,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
------	---------------------------

추진현황 및 계획	○ 관할 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확인)
-----------	--

해외조직망		관 할 지 역	연락처
중국 지역 본부	다 련	동북3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 몽골	■ E-Mail : dalianat@at.or.kr
	홍 콩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광둥성	■ E-Mail : hkcenter@at.or.kr
아세안 지역 본부	하 노 이	아세안지역본부, 베트남북부, 라오스	■ E-Mail : hanoi@at.or.kr
	방 록	태국, 미얀마, 인도	■ E-Mail : bangkok@at.or.kr
미주본부	자카르타	싱가포르, 말련, 인니, 호주, 뉴질랜드	■ E-Mail : jakarta@at.or.kr
파 리	LA	미국 서부, 산악 및 중남미	■ E-Mail : losangeles@at.or.kr
		유럽, 이스라엘	■ E-Mail : paris@at.or.kr
두 바 이		중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E-Mail : dubai@at.or.kr
	모스크바	러시아	■ E-Mail : atvladi@at.or.kr

담당부서	○ 신시장개척부(061-931-0962)
------	------------------------

23. 해외판촉행사 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연계 판촉(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품 취급 수입 바이어, 유통업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 현지 수입 바이어가 aT 해외지사로 직접 신청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 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콘텐츠 제작·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온라인시식체험 등 판촉 행사 관련 홍보 비용 - 판촉 시식요원 고용비, 시식 식품 비용 및 관련 소모품비 등 ○ 업체 스스로 제시하는 수입목표액 달성 필요(국고지원액의 최소 2배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무액(수입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달성률(%)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한도 이내 행사 관련 실행비용의 80% 지원(은·오프라인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종합 판촉은 50백만원 한도 추진하되, 수출전략품목(신선부류,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을 포함한 판촉은 최대 2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수출전략품목(신선부류,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판촉은 지원비율 90%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품 단독판촉은 지원비율 50% - 행사 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효과 및 품목의 유망성, 수입업체 현황, 행사운영 적정성, 품목·지역 도전성 											
진행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5%;">상반기 사업자 모집 (2월)</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15%;">상반기 사업자 선정 (2월말)</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20%;">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15%;">하반기 사업자 모집 (6월)</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15%;">하반기 사업자 선정 (6월말)</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20%;">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td> </tr> </table>	상반기 사업자 모집 (2월)	▶	상반기 사업자 선정 (2월말)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하반기 사업자 모집 (6월)	▶	하반기 사업자 선정 (6월말)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상반기 사업자 모집 (2월)	▶	상반기 사업자 선정 (2월말)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하반기 사업자 모집 (6월)	▶	하반기 사업자 선정 (6월말)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모집시기	○ 모집시기 : 매년 2월(상반기), 6월(하반기)											
신청방법	○ global.at.or.kr 모집공고 → 행사권역 aT해외지사로 이메일 신청 (신청주체 : 바이어)											
문의처	○ 식품수출부(061-931-0744, 0746)											



24. 검역해소품목 지원

개 요	○ 농가소득 연계도는 높으나, 국가별 수출불가 또는 까다로운 검역조건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의 시장진입을 지원
지원대상	○ 국가간 검역협상 완료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품목, 검역조건 변경 또는 수출 대상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된 품목 * 단, 사업대상 품목이 전년도 기준 수출대상국에 5백만불 초과 수출했을 경우 미지원
지원분야	○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 입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입차 및 설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온라인시식체험 등 판촉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관련 집행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소비촉진에 유익한 소포장 또는 고급화 패키지 비용 - 지원국가 해외공동물류센터* →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 aT와 약정된 18개국 85개소('22.12월 기준) 현지 전문 물류업체 참고를 의미 ○ 소비기반 조성 홍보 - 해당국 시장진입에 유익한 콘텐츠 또는 국가 이벤트를 연계한 매스미디어 또는 온라인, 모바일 매체를 통한 검역해소 품목 홍보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기준	○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기업*도 허용하되 50% 지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의미함 - 단, 판촉 대상 품목이 aT·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수출전략품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비율에 10%p 추가 지원하고, 유통업체 직접 연계(=바이어 매장)로 추진 시 집행비용의 100% 지원 ○ 소비기반 조성 홍보 - 콘텐츠 제작·송출비, 이벤트 홍보비, 인플루언서 섭외비, 기타 운영비 등
모집시기	○ 매 분기별
신청방법	○ aT 해외지사 및 국내공모*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실시 * 국내공모는 오프라인 판촉마케팅 사업에 한함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 농임산수출부(061-931-0824)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25. 전략품목육성지원

개 요	○ 해당국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맞춤형 마케팅 집중 지원				
지원대상	○ 수출 전략품목 제조·수출 업체, 관련 협회, 수입 바이어, 유통업체 등 * 지원품목 : 현지전문가 조언 등 추천으로 전략품목 선정 예정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p>○ (지원내용) 전략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의 80-9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임차비, 장치비, 온·오프라인 홍보비, 판촉인건비, 시식행사비 - 지원비율 : 품목별 상이(80-90%) * 신신 관련 품목 90%, 그 외 80% - 지원한도 : 개별사업 최대 5천만원 한도 - 사업의무액 : 품목/사업유형에 따라 약정금액의 2배 이상 수입의무(CIF기준) <p>○ (선정방법) 해외지사 품목·사업계획 제출 → 평가 → 최종 선정 및 예산 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 : 평가 점수 합산하여 평점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품목적절성, 참신성</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여건, 품목 특성 반영여부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예산집행 적정성 - 사업계획 실효성 및 실수출 연계성 - 추천품목 해당국 수출 확대 가능성 - 창의성, 신유통 활용 등 기존 사업 차별성 등 </td> </tr> </tbody> </table>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품목적절성, 참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여건, 품목 특성 반영여부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예산집행 적정성 - 사업계획 실효성 및 실수출 연계성 - 추천품목 해당국 수출 확대 가능성 - 창의성, 신유통 활용 등 기존 사업 차별성 등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품목적절성, 참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여건, 품목 특성 반영여부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예산집행 적정성 - 사업계획 실효성 및 실수출 연계성 - 추천품목 해당국 수출 확대 가능성 - 창의성, 신유통 활용 등 기존 사업 차별성 등 				
사업별 추진계획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해외지사 품목·사업 계획 제출(2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품목·사업선정 및 조정(예산 등) (3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추진 및 점검(4-11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산 및 평가 (12월)</div> </div>				
모집시기	○ 매년 2-3월 경				
신청방법	○ 관할 해외지사가 사업 수요조사 및 계획서 공문을 통해 신청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부(061-931-0971, 0978)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26.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 여건 확보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6개 권역 20개국에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역</th> <th>최우선 전략국가(8)</th> <th>차순위 전략국가(12)</th> </tr> </thead> <tbody> <tr> <td>아시아</td> <td>필리핀</td> <td>인도, 캄보디아, 몽골</td> </tr> <tr> <td>CIS</td> <td>카자흐스탄</td> <td>-</td> </tr> <tr> <td>유럽</td> <td>독일, 영국</td> <td>튀르키예,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td> </tr> <tr> <td>중동</td> <td>사우디(카타르)</td> <td>-</td> </tr> <tr> <td>중남미</td> <td>멕시코</td> <td>아르헨티나, 과테말라</td> </tr> <tr> <td>기타</td> <td>호주, 캐나다</td> <td>뉴질랜드, 이스라엘, 남아공</td> </tr> </tbody> </table>	권역	최우선 전략국가(8)	차순위 전략국가(12)	아시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몽골	CIS	카자흐스탄	-	유럽	독일, 영국	튀르키예,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중동	사우디(카타르)	-	중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기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남아공
	권역	최우선 전략국가(8)	차순위 전략국가(12)																			
아시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몽골																				
CIS	카자흐스탄	-																				
유럽	독일, 영국	튀르키예,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중동	사우디(카타르)	-																				
중남미	멕시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기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남아공																				
	* 시장다변화 전략국가는 '23년 기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규모 : 35개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지원패키지 연중 집중 지원('23년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원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시장개척 사업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해외영업, 수출인력 보조, 품목개선, 해외 마케팅 및 판촉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 지원한도 : 최대 30백만원 * 집행액의 80% / 수산물만 취급하는 업체 제외 </td> </tr> <tr> <td>세일즈로드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수출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등의 B2B 행사와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 현지인 품평회 등의 B2C 행사를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최우선 전략국가별 연중 1회 / 5~10월 / 월 2~3개국 개최) * 코로나19 상황 악화시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전환 검토 ** 수출상담, 샘플 발송비, 통역비, 항공비, 숙박비 등 지원 </td> </tr> <tr> <td>청년해외 개척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 추진 청년인턴 지원 (aT에서 선발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 교육 실시) * 상황에 따라 해외 출국 불가 시, 수출업체 국내 파견 현장근무 추진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사항	시장개척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해외영업, 수출인력 보조, 품목개선, 해외 마케팅 및 판촉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 지원한도 : 최대 30백만원 * 집행액의 80% / 수산물만 취급하는 업체 제외 	세일즈로드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수출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등의 B2B 행사와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 현지인 품평회 등의 B2C 행사를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최우선 전략국가별 연중 1회 / 5~10월 / 월 2~3개국 개최) * 코로나19 상황 악화시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전환 검토 ** 수출상담, 샘플 발송비, 통역비, 항공비, 숙박비 등 지원 	청년해외 개척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 추진 청년인턴 지원 (aT에서 선발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 교육 실시) * 상황에 따라 해외 출국 불가 시, 수출업체 국내 파견 현장근무 추진 													
	구분	지원사항																				
시장개척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해외영업, 수출인력 보조, 품목개선, 해외 마케팅 및 판촉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 지원한도 : 최대 30백만원 * 집행액의 80% / 수산물만 취급하는 업체 제외 																					
세일즈로드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수출업체로 구성된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한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등의 B2B 행사와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 현지인 품평회 등의 B2C 행사를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최우선 전략국가별 연중 1회 / 5~10월 / 월 2~3개국 개최) * 코로나19 상황 악화시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전환 검토 ** 수출상담, 샘플 발송비, 통역비, 항공비, 숙박비 등 지원 																					
청년해외 개척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시장개척 추진 청년인턴 지원 (aT에서 선발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 교육 실시) * 상황에 따라 해외 출국 불가 시, 수출업체 국내 파견 현장근무 추진 																					
진행절차	<table border="1"> <tr> <td>당해년도 사업자 모집(1월)</td> <td>▶</td> <td>당해년도 사업자 선정(2~3월)</td> <td>▶</td> <td>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3월~)</td> <td>▶</td> <td>중간점검 (7~8월)</td> <td>▶</td> <td>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12월)</td> </tr> </table>	당해년도 사업자 모집(1월)	▶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2~3월)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3월~)	▶	중간점검 (7~8월)	▶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12월)												
당해년도 사업자 모집(1월)	▶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2~3월)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3월~)	▶	중간점검 (7~8월)	▶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12월)														
모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1월경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사업신청 상단메뉴 [모집공고/신청] 클릭 → “2023년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사 모집공고” 클릭 → 해당 공고문 하단의 [사업신청] 버튼 클릭 → 사업신청서 제출 → 웹포스시스템 로그인 → 제출서류 목록 확인 후 체크박스 클릭 → [서류발급 및 제출] 클릭 → 제출 완료 * 온라인 접수 원칙 : 우편 접수, 퀵, 택배, 방문 접수 불가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시장개척부(061-931-0965, 0967) 																					

27. 온라인모바일마케팅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사업

개 요	○ 중소식품기업 대상 해외 온라인몰 입점지원(마케팅 비용, 인력,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개척 및 수출확대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중소 수출업체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플랫폼 입점비	B2B 알리바바 GGS 가입비용, 아마존 Service Fee 등 플랫폼 계정 생성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일체 (지원제외) 국내·외 배송비, 물류비 등 (아마존 FBA포함)							
	마케팅 홍보비	(플랫폼 광고) 온라인 오픈마켓 내 광고집행 비용 (온라인 광고) 구글 및 글로벌 SNS 내 광고 집행비용 (콘텐츠 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이미지 촬영,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콘텐츠 제작, 번역 비용 등 (지원제외) 비품 구매 및 자산성 상품 구매내역							
	교육지원	입점 세미나, 온라인 수출 컨설팅 및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용 비용							
	온라인 전문인력 고용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역량을 갖추거나 경험을 쌓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 청년 등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인력 채용 지원 (지원제외) ① 세전 기본급의 90% 지원하되 상여금, 식대, 초과근무, 출장비 등 기본급 이외의 급여 사항, ② 직계가족 채용, ③ 타 기관, 부처의 인건비 지원사업 참가사							
선정기준	○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플랫폼 입점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여기업 선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1-2월)	▶	업체선정 (2월)	▶	약정체결 및 사업운영 (~11월)	▶	사업점검 (매월)	▶	정산 및 평가 (12월)
모집시기	○ 매년 1-2월경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문의처	○ 마케팅지원부(061-931-0974, 0977)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28. 뉴미디어마케팅

□ K-브랜드 연계 한류마케팅 사업

개 요	○ 문체부·콘진원 등 범부처, 기관 연계 한류 콘텐츠 내 한국농식품 간접광고(PPL) 및 콘텐츠 활용 2차 홍보 추진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중소 수출업체 - 목표국가 상표권 출원·등록이 완료되거나, 현지 유통매장 또는 온라인 마켓 입점必		
지원내용	단계	내용	주요 역할
	1단계	간접광고	홍보포인트 확정 > 콘텐츠 매칭 > 콘텐츠 제작
			기업별 제품 소구(홍보)포인트 확정 > 콘텐츠-홍보품목(기업)간 매칭 > 촬영에 필요한 샘플 지원 후 콘텐츠제작
	2단계	2차 홍보	수출기업 > 문체부 > 수출기업, 문체부
홍보계획수립 > 사업운영 > 정산요청			
선정기준	○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사업적합성, 이해도, 홍보 역량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참여기업 선정		
진행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참가업체 모집·선정 ('23.1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업별 드라마 매칭 및 간접광고 송출 (2-8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간접광고 활용 2차 홍보 추진 (~11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결과보고 및 정산 (12월)</div> </div>		
모집시기	○ 매년 1~2월경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사업신청] → “K-브랜드연계 한류마케팅 사업”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문의처	○ 마케팅지원부(061-931-0974)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6 수출 지원 자금용자

29.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개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자금배정	- 업체별 배정한도 •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업체별 배정금액은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배정업체중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의 수출실적의 3배 또는 계약금액 적용 • 계약금액 :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예산규모	○ '23년 : 453,646백만원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2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안내 공고(1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예산소진시까지 추가 신청배정(3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대출 (지원희망시기, 담보제공)</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정산</div> </div> <p>○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등</p> <p>※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p>	
담당부서	○ 정책금융부(061-931-1145)	



30.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개 요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0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20천\$ 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재원</td> <td>농산물가격안정기금</td> </tr> <tr> <td>용도</td> <td>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td> </tr> <tr> <td>지원금리</td> <td>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td> </tr> <tr> <td>지원비율</td> <td>총사업액의 80% 이내</td> </tr> <tr> <td>대출기간</td> <td>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td> </tr> <tr> <td>사업의무</td> <td>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td> </tr> <tr> <td>지원한도</td> <td>업체당 30억 원 이내</td> </tr> <tr> <td>선정기준</td> <td>적격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배정</td> </tr> </tbody> </table>	구 분	내 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사업의무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지원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	선정기준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배정
	구 분	내 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매반기말 이자)																	
	사업의무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지원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																	
선정기준	적격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배정																		
예산규모	○ '23년 : 4,800백만원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안내 공고(1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예산소진시까지 추가 신청배정(3월~)</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성고 확인</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대출 (담보 제공)</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후관리 (해외인증서 제출)</div> </div> <p>○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최근 재무제표 등</p> <p>※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p>																		
담당부서	○ 정책금융부(061-931-114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찾아보기는 본 가이드북의 31건의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제도 명칭의 ㄱ-ㄴ-ㄷ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제도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페이지
검역해소품목 지원	농임산수출부	061-931-0825	31p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1, 0983	22p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2, 0863	10p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수출기반부	061-931-0831, 0835	12p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정책금융부	061-931-1145	37p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정책금융부	061-931-1145	36p
농식품수출정보(KATI)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5	1p
뉴미디어마케팅	마케팅지원부	061-931-0974	35p
바이어 거래알선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2, 0984	26p
선도유지제 지원	수출기반부	061-931-0834, 0836	14p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기반부	061-931-0832, 0837	15p
수출보험지원	농임산수출부	061-931-0849	18p
수출상품화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8, 0745	8p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농임산수출부	061-931-0821, 0844	7p
수출전문인력육성 교육	농임산수출부	061-931-0821	5p
수출컨설팅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8, 0867	3p
수출통합조직 육성	농임산수출부	061-931-0821, 0844	6p
수출홍보사이트(K-Food Trade)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1, 0986	2p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신시장개척부	061-931-0965, 0967	33p
안전성관리	농임산수출부	061-931-0834	13p
온라인모바일마케팅	마케팅지원부	061-931-0974, 0977	34p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2, 0863	11p
전략품목육성 지원	마케팅지원부	061-931-0971, 0978	32p
항공공동물류활성화	수출기반부	061-931-0832, 0837	16p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신시장개척부	061-931-0962	29p
해외공동물류센터·콜드체인 지원사업	신시장개척부	061-931-0961, 0963	17p
해외인증등록지원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2, 0864	21p
해외판촉행사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4, 0746	30p
현지화 지원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1, 0872	4p
Global K-Food Fair	마케팅지원부	061-931-0975, 0976	25p



<참고 :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 aT 국내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주 소	연 락 처
서울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TEL 031-8060-6040 FAX 031-8010-1095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TEL 032-272-3012 FAX 032-712-272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EL 033-920-1544 FAX 033-811-1081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EL 043-902-9526 FAX 043-711-1581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TEL 042-389-5017 FAX 042-720-928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TEL 063-904-5874 FAX 063-711-1273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TEL 062-940-7015 FAX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EL 053-218-4898 FAX 053-722-237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TEL 051-947-1086 FAX 051-719-9630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EL 055-608-5834 FAX 055-274-481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TEL 064-746-9472 FAX 064-800-8960

◦ aT 해외지사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 국 지 역 본 부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100102 中國 北京市 朝陽區 廣順北大街 33號院 1号楼 1单元 6层 603室)	E-Mail : beijingat@at.or.kr TEL 86-10-6410-6120~1 FAX 86-10-6410-6122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200336 中國 上海市 長寧區 崑山關路 83號 新虹橋中心大廈 3201室)	E-Mail : shanghaiat@at.or.kr TEL : 86-21-3256-6325~7 FAX : 86-21-3256-6328
	홍콩 지사	Room 1003, 10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E-Mail : hkcenter@at.or.kr TEL : 852-2588-1614~16 FAX : 852-2588-1919
	다롄 지사	Room 1302, Xiwang Building, NO136 Zhongshan Road, Zhongshan District, Dalian 116001 (大连市中山区中山路136号希望大厦1302号)	E-Mail : dalianat@at.or.kr TEL : 86-411-3960-3361 FAX : 86-411-3960-3362
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Qingdao aT logistics Co., Ltd 3 Baishaw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青島市 城陽區 流亭街道 白沙灣路3号 青島愛特物流有限公司)	E-Mail : qingdao_logistics@at.or.kr TEL : 86-532-6696-2229 FAX : 86-532-6696-2181	
일 본 지 역 본 부	도쿄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OREA CENTER 5F)	E-Mail : tokyo@at.or.kr TEL : 81-3-5367-6656, 6693-94 FAX : 81-3-5367-6657
	오사카 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大阪市 中央區 安土町 1-8-15, 野村不動産大阪B/D 8F)	E-Mail : osaka@at.or.kr TEL : 81-6-6260-7661 FAX : 81-6-6260-7663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아 세 안 지 역 본 부	하노이 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B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E-Mail : hanoi@at.or.kr TEL : 84-24-6282-2987, 2989 FAX : 84-4-6282-2989
	호치민 지사	CJ Building, Floor 3, 2 Bis 4-6 Le Thanh To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E-Mail : atcenterhcm@gmail.com TEL : 84-28-3822-7504 FAX : 02-838-227-503
	자카르타 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E-Mail : jakarta@at.or.kr TEL : 62-21-2995-9032-3 FAX : 62-21-2995-9034
	방콕 지사	#2102 Level 21, Interchange 21, 33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E-Mail : bangkok@at.or.kr TEL : 66-2-611-2627-9 FAX : 66-2611-2626
	쿠알라 룸프르 지사	Suite 6-04, 6th Floor, Menara Hap Seng,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E-Mail : atcenterkl@at.or.kr TEL : 60-3-2706-4299 FAX : 60-3-2706-4301
미 주 지 역 본 부	뉴욕 지사	15 East 40th Street Suite 701 New york NY 10016 E-Mail : newyork@at.or.kr TEL : 1-212-889-2561 FAX : 1-212-889-2560
	로스앤젤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E-Mail : losangeles@at.or.kr TEL : 1-562-809-8810 FAX : 1-562-809-1191
	상파울루 지사	Av Paulista 1636, 10andar, #1008 - São Paulo CEP 01310-000 E-Mail : saopaulo@at.or.kr TEL : 55-11-91045-4577
파리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E-Mail : paris@at.or.kr TEL : 33-1-4108-6076-8 FAX : 33-1-4108-2016	
두바이 지사	PO BOX 57528 Office #48, Sunset Mall, Jumeirah Beach Rd, Jumeira 3, Dubai, UAE E-Mail : dubai@at.or.kr TEL : 971-4-339-2213 FAX : 971-4-456-1155	
모스크바 지사	12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World Trade Center, Moscow E-Mail : atvladi@at.or.kr TEL : 070-4617-3277	